#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1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개호・위성곤・김현정

이정문 • 서영교 • 부승찬

정진욱 • 조인철 • 박수현

전진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

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자원시설세	10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사.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
	<u>일</u>
<u>사.</u> (생 략)	<u>아.</u> (현행 사목과 같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